

2025

GUIDE BOOK

지식재산경영 전략 가이드북



인사말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재투자 선순환을 통해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 2월 서울시의 지원과 특허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 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IP컨설팅과 지식재산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기업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여러분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 구성원 일동



RIPC 서울지식재산센터
Seou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교육·IP스타기업육성 등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해결과 지식재산경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ipseoul.kr)
- (서울)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seoul)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사업관리시스템 (pms.ripc.org)

구성원



총 **9** 명 | 변리사 **3** 명 | 컨설턴트 **4** 명 | 행정연구원 **1** 명 |

위치 및 연락처



상암 사무소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13층 서울지식재산센터
연락처 02-2222-3860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요약

구분	세부사업 명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고
				특허	PCT, 개별국	
서울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시민·중소기업	지식재산바우처	특허	PCT, 개별국	상·하반기
				상표	마드리드, 개별국	
				디자인	헤이그, 개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시민·중소기업	심판소송 지원	무효심판, 국내외 소송, 경고장 등	수시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일반·심층 컨설팅, 상표분쟁예방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시민·중소기업	인식제고 교육	온·오프라인 IP교육	수시	
디지털 콘텐츠			10분 내외			
서울시 + 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기업	IP경영 컨설팅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동영상 등	수시	
			해외출원 등록지원	해외출원·등록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IP경영 컨설팅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동영상 등	수시	
				국내 상표출원		국내 상표권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	IP경영 컨설팅	브랜드개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수시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7년 미만)		IP경영 컨설팅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국내 특허출원	국내 특허권	수시	
후속지원			3D모델링·PCT 등			
IP창업교육			IP창업교육·IP창업클럽			
재능나눔	개인사업자	재능기부자 ↔ 약자기업		수시		

목차

1장.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00
1. 지식재산경영 전략의 필요성	00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환경 조성방법	00
1) 사내 환경조성	00
2) 지식재산경영 전략수립과 운영	00
3. 기대효과	00
2장. 지식재산권 규정 개론	00
1. 지식재산권 정의	00
2. 산업재산권 개요	00
1)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권	00
2) 물품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	00
3)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00
4)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권	00
3. 사상과 감정의 창의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	00
4. 기업의 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00
3장.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00
1. 산업재산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침해 판단 방법	00
2) 침해 대응 방법	00
2. 저작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저작권의 침해	00
2) 저작권 침해의 대응 방법	00
3. 영업비밀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00
2) 영업비밀 침해의 대응 방법	00
기타. 부정경쟁행위	00

목차

4장.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방법	00
1. 산업재산권의 분쟁 예방 방법	00
2. 영업비밀 침해의 사전 예방 방법	00
5장. 지식재산권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 사례	00
1. 시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저작권)	00
2. 불특정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0
3.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00
4. 내가 만든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0
5.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0
6. 해외 플랫폼(테무,알리) 침해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00
7. 상표권이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0
8.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00
9.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00
10. 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0
부록.	
1.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소개	00
2.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락처	

1장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1. 지식재산경영 전략의 필요성	00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환경 조성방법	00
1) 사내 환경조성	00
2) 지식재산경영 전략수립과 운영	00
3. 기대효과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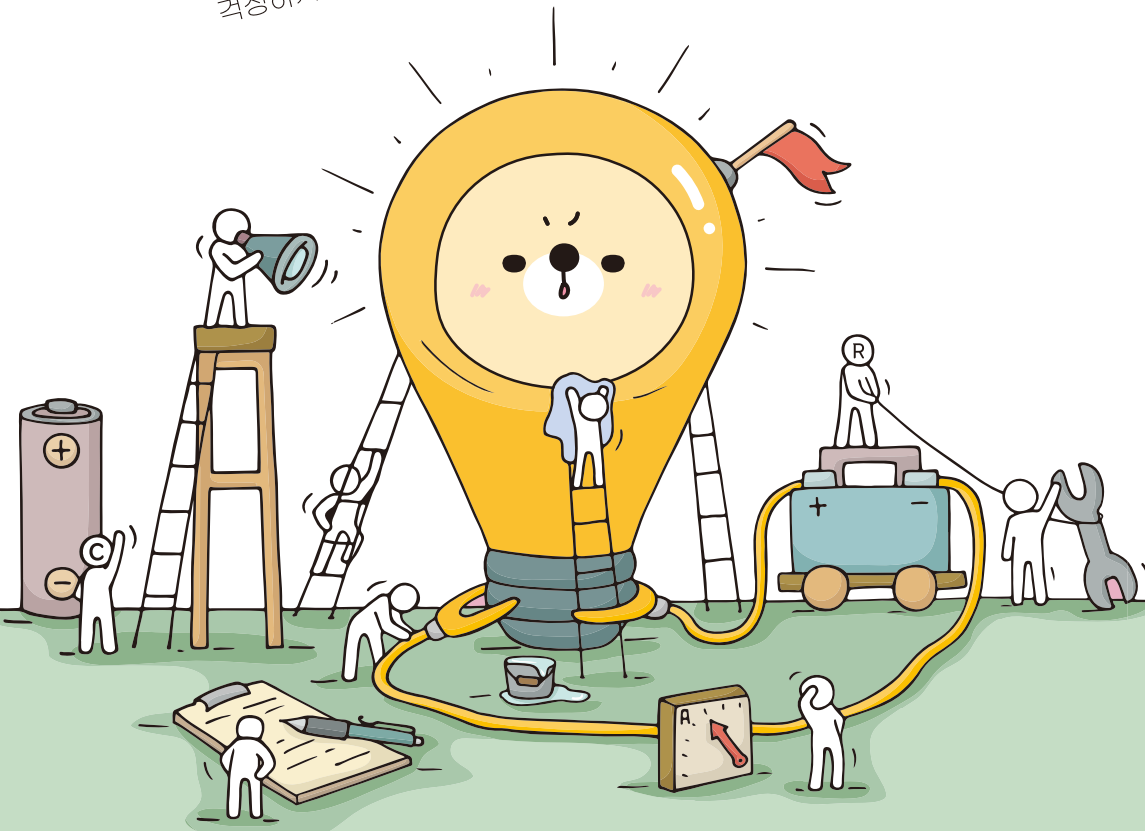
서울지식재산센터 상징캐릭터 ‘지재씨’

서울지식재산센터의 마스코트 이재씨를 소개합니다!
지재씨는 매력 넘치는 아이디어 बैं크의 주인공이에요.
지재씨는 전구의 후손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지니
고 있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전구색이 변하고 눈이 감
겨버려요.

지재씨는 감성적이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성격이
예요. 그의 낭만적인 특징 때문에 휴식시간에는 정적
인 취미를 즐기며 혼자서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독착정으로 일하는 이재씨, 그는 지식
재산경영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재씨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1장.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의 IP 경영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지식재산경영 전략의 필요성

1.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은 기업의 기술, 브랜드, 디자인, 아이디어 등과 같은 창의적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하고, 상표는 브랜드를,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1.2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경영 전략이 중요한 이유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독창적인 기술, 브랜드, 제품을 보호합니다.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상표를 통해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식재산은 추가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하거나, 브랜드를 이용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지식재산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술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1.3 글로벌화 및 기술 혁신 속에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현지 특허 및 상표 등록은 필수적이며, 다른 국가에서의 기술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 맞춰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환경 조성방법

2.1 사내 환경 조성

지식재산 교육 및 문화 확립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 관리자 및 전문가 배치

사내에 전담 지식재산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전문가(예: 특허 변리사)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재산 관리자가 있으면,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저작권 관리 등 법적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환경 조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2.2 지식재산경영 전략 수립과 운영

지식재산 현황 파악 및 정리

먼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분석하고,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보호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호되지 않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

지식재산은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하거나, 상표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한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면 수익 창출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법률을 이해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사들이나 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침해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적 점검도 필요합니다.

3. 기대효과

3.1 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통해 기업은 자사의 기술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3.2 수익 창출

중소기업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브랜드 상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3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상승

지식재산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 자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3.4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및 상표 보호는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현지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2장

지식재산권 규정 개론

1. 지식재산권 정의	00
2. 산업재산권 개요	00
1)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권	00
2) 물품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	00
3)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00
4)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권	00
3. 사상과 감정의 창의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	00
4. 기업의 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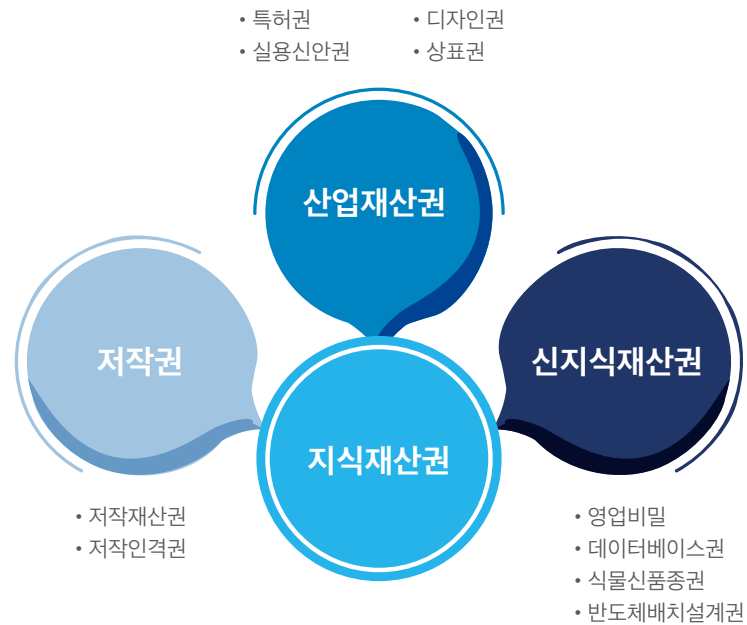
2장.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개론

1. 지식재산권 개요

인간의 창조적 활동, 지식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한 무형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부여된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2. 산업재산권 개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4가지를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독점·배타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비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내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을 위해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산업재산권의 예시

- 실용신안권(주변 개량 기술)**
 - 케이스 구조
 - 안테나 장치
- 상표권(상품의 명칭)**
 - GALAXY S20
 - Samsung Galaxy Z Flip
 - SAMSUNG GALAXY FOLD
- 디자인권(물품의 외관)**
 - 핸드폰 외형
 - 케이스 외형
 - UI 디자인
- 특허권(원천기술/핵심기술)**
 - 통신 기술
 - 배터리 기술
 - 디스플레이 기술

1)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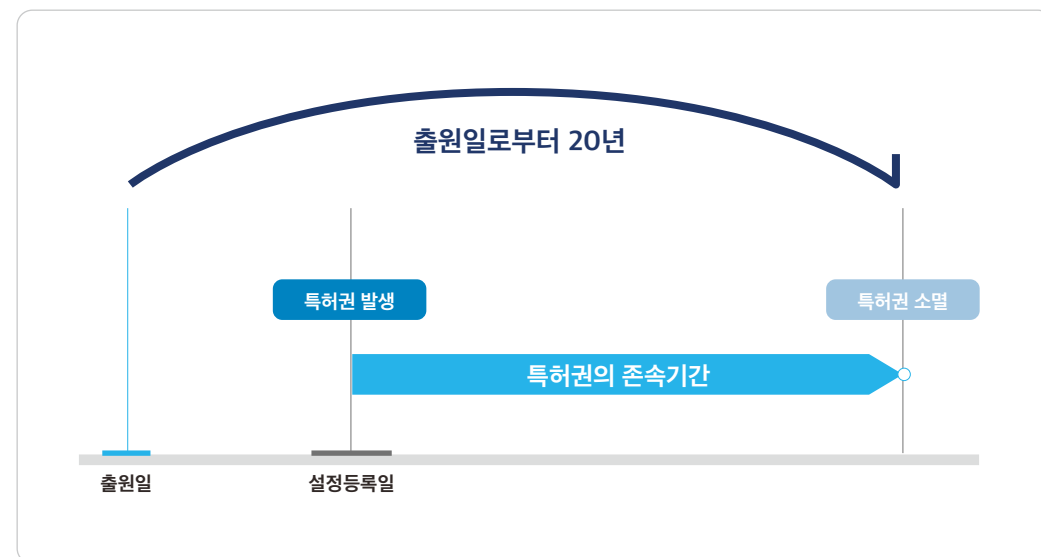
◎ 특허와 특허법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하며, 특허권은 특허법과 같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 기술 공개->기술축적 및 공개기술 활용->산업발전, 독점권 부여->사업화 촉진 및 발명 의욕 고취->산업발전

◎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한편 특허권을 가진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권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 대리인 선정

특허출원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알아야 하는 절차, 등을 특허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출원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므로 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명 상담 및 컨설팅

대리인이 선정되면 대리인과 발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나의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허의 등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받고, 특허권의 획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받아 발명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 명세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발명 상담 및 컨설팅을 기초로 출원대상 발명이 확정되면 대리인은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때, 대리인은 발명자에게 명세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출원 시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발명자 정보, 출원인 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원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출원

출원은 명세서, 필요정보, 및 서류만 준비되면 진행할 수 있고,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확정 받는다.

○ 심사~등록/거절

- ▷ 심사: 심사청구를 하면(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출원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음),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는지 심사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바로 특허 결정이 된다.
- ▷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대응(보정서/의견서 제출): 거절 이유는 나의 발명과 선행기술이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 이에 대해 선행기술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세서의 특허 청구 범위가 보정될 수 있고 발명의 권리 범위도 조정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2~3회 반복될 수 있다.
-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에 따라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결정된다. 등록결정 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등록되고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포기 처리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이 확정된 발명이라도 거절결정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등록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사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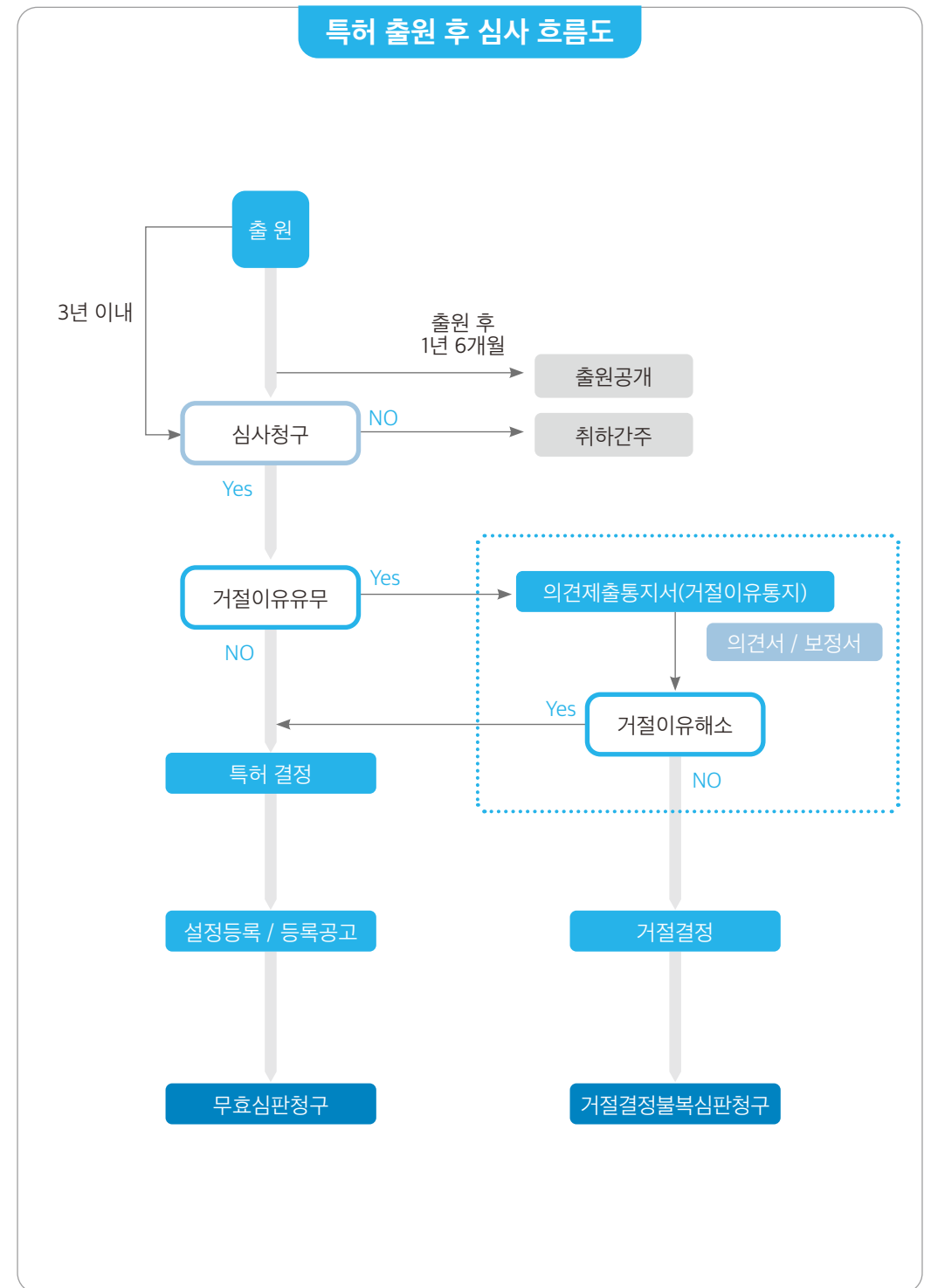
○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특허권의 무효를 요구하는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다.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확정된 특허는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등록 유지/포기

특허권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이후에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 특허심사 주요제도

○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다.

○ 예비심사제도

공식심사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사전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원인은 거절 이유를 공식심사 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권리화가 가능하다.

▶ **예비심사 대상:** ①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②고난이도 특허분류 또는 중소기업 PCT 다출원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 일괄심사제도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 **사례1:** 하나의 스마트폰 제품에 관련된 안테나, 카메라 등에 관한 특허, 스마트폰 브랜드명 등에 관한 상표,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

▶ **사례2:** 교육서비스 앱의 서비스 명칭,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 디자인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제품군 출원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 보정안 리뷰제도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 이유에 대응한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 전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다.

○ 임시명세서제도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속한 출원이 가능하다. 단,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해야 한다.

◎ 특허 관련 FAQ'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른 건가요?

특허출원은 나의 발명으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한지 심사받기 위해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관련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특허출원 후 심사를 통해 등록 결정된 특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른 것이며, 특허권은 특허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특허출원은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출원은 제품 개발 완료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준비는 제품 개발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을 검토하게 되는데, 혹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개발 방향을 바꿀 기회가 생기고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회피전략 등을 세우며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특허 또는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는 것 같은데 특허등록이 가능하나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선행 특허 또는 제품과 대비하여 차별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기술적 특징의 기준도 기술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내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는,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등록이 된 국가에만 특허권이 인정되므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진출할 국가 각각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물품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발명으로서 특허보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안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는 출원 후 변경 출원이 가능한데, 물품에 관한 기술로서 특허로 출원하였다가 심사 결과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보성의 기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과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비하여 보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이 대상이 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대상이 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등록고안이란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고안을 뜻한다.

◎ 실용신안권의 발생과 효력 및 등록절차

실용신안권의 발생과 효력, 및 등록 절차는 특허권과 동일하며 존속기간과 진보성 판단 기준만 상이하다.

- ▶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 **진보성 판단기준:** 실용신안은 선행고안 대비 **“용이하게(극히 용이하게X)”** 발명 가능한지로 판단된다.

3)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 외형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물품이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한편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을 뜻한다.

◎ 디자인의 종류

일반디자인	동적디자인	화상디자인	글자체디자인
			
일반적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이 정지한 상태만으로는 그 변형된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것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자꼴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

◎ 디자인권의 발생과 효력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다.

◎ 디자인의 출원 준비

디자인은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작성이 완료되면 출원 준비의 90%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면은 아래와 같이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등록될 수 있고(색상 유무는 상관없음), 도면 내에 형상 및 모양과 혼동되는 불필요한 선(지시선, 배경,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즉, 디자인 물품 이외에 배경이나 장식물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도면 작성 예시]



◎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 부분디자인 제도

<p>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하는 제도이다. 전체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물품의 일부를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물품의 일부에 부분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디자인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p>	<p>[신발의 전체디자인이 아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p>
--	--

○ 관련디자인 제도

<p>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때 처음 출원한 디자인에서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출원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변형디자인까지 확장될 수 있다.</p>	<p>[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p>
--	------------------------

○ 화상디자인 제도

<p>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다. 움직임이 있는 화상디자인(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한다.</p>	<p>[동적화상디자인]</p>
---	------------------

○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스타일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면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인지 여부만 판단 받게 된다. 다만, 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를 판단하여 등록디자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 ▶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1류(식품),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예시: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비행기 형상, 자동차 형상), 흔한 무늬(물방울 무늬, 바둑판 무늬),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경치, 등

4)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권

◎ 상표와 상표법

상표란 자기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한다. 상표법상 상품은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 상표유형의 예시

문자	도형복합	도형	색채	입체
제42-0006401호	제 40-18501970000	제45-0025104호	제40-1183777호	제40-1036102호



홀로그램	동작
제41-0354050호	제40-1194199호



◎ 상표권의 발생과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한편,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며,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상표권의 주요 제도

○ 1상표 1출원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업 지정

상표출원은 보호받으려는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상표에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 상품 및 서비스업은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 구분되고, 각 류에는 세부 항목으로 다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다.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즉, 공중은 공고된 상표를 보고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이유와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 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불사용 취소 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표 사용의 촉진 및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켜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 상표 관련 FAQ

상호가 상표인가요?

상표는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상호는 영업에 관한 인적 표지의 일종으로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 상호가 상품 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도 있어, 양자 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 IP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 표시 기능을 하고, 상표는 상품출처의 표시 기능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이 상표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이름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도메인이름에 상당하는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사상과 감정의 창의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


◎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상 보호대상과 보호대상이 아닌 것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의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무연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로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등록, 및 효력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권리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등록의 효력 때문에 저작권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력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즉,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등록된 창작년월일에 공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신고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과실의 추정	저작물이 침해 당했을 때 과실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등록된 창작년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창작일의 추정	저작권자는 소송에서 저작물의 창작시점을 증명해야 하나,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적어도 저작권 등록일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저작권등록일 이전에 창작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다.

◎ 저작권의 등록절차

○ 저작권 신청방법

홈페이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ros.or.kr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인증서와 회원 가입 필수

- 본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류 작성
- 신청인의 회원가입과 인증서로 본인 실명 확인(허위등록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결제(신용카드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휴대폰 결제) 및 접수완료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 출력

*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위임장, 단독신청승낙서, 업무상저작물 확인서)를 '나의 저작권 >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

우편 접수

- 한본 홈페이지 '신청 서류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
- 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우편함 / 우체국)를 등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 수신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 저작권 등록절차

<p>1단계 신청 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 등록종류 - 신청인 적격 - 신청방법 선택 	<p>2단계 신청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작성 - 등록기관 제출 - 수수료 납부 	<p>3단계 등록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적격 - 서류 구비여부 [불충분할 경우 보완] - 신청물 심사 	<p>4단계 결과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수리 [등록증 교부] - 신청반려 - 이의 신청
---	--	---	--

◎ 저작권 관련 FAQ

캐릭터를 창작했는데, 캐릭터는 저작권의 대상인가요 상표권의 대상인가요?

캐릭터는 “식별력”과 “독자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캐릭터는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는 상표와 “독자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물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와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 방식인 산업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에 의해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제작한 영상 콘텐츠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배경음악, 사진, 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영상 안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출처 표기를 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폰트를 개발하였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폰트는 글씨체의 도안 자체로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폰트 파일입니다. 즉,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인 TTF, OTF 등으로 저장되는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기업의 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 영업비밀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이때의 경영상의 정보에는 제조방법, 공정방법, 마케팅전략, 고객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의 분류

경영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기술상의 영업비밀
<p>각종 주요계획, 결재서류, 거래실적, 단가, 미래정책자료, 고객명부, 관리정보, 매뉴얼, 중요자료 등 경영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p>	<p>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건의 생산 및 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등 기술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p>

○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분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지, 특허로 보호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을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측방법, 콜라 제조법 등 역설계를 해도 타사의 침해를 발견할 수 없는 기술, 타사의 독자적 개발이 곤란한 기술, 특허권의 침해 발견이 곤란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상기술이 장래에 표준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상기술과 제품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상기술이 제품에 가까운 기술, 대상기술의 기술수준이 경쟁사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서 경쟁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업비밀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를 전제로 함 비밀로서 계속 관리되면 연구히 자신만 사용할 수 있음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를 전제로 함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되면 출원 후 20년 동안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획득함.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 타인의 특허권 침해 시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 방안 - 원본증명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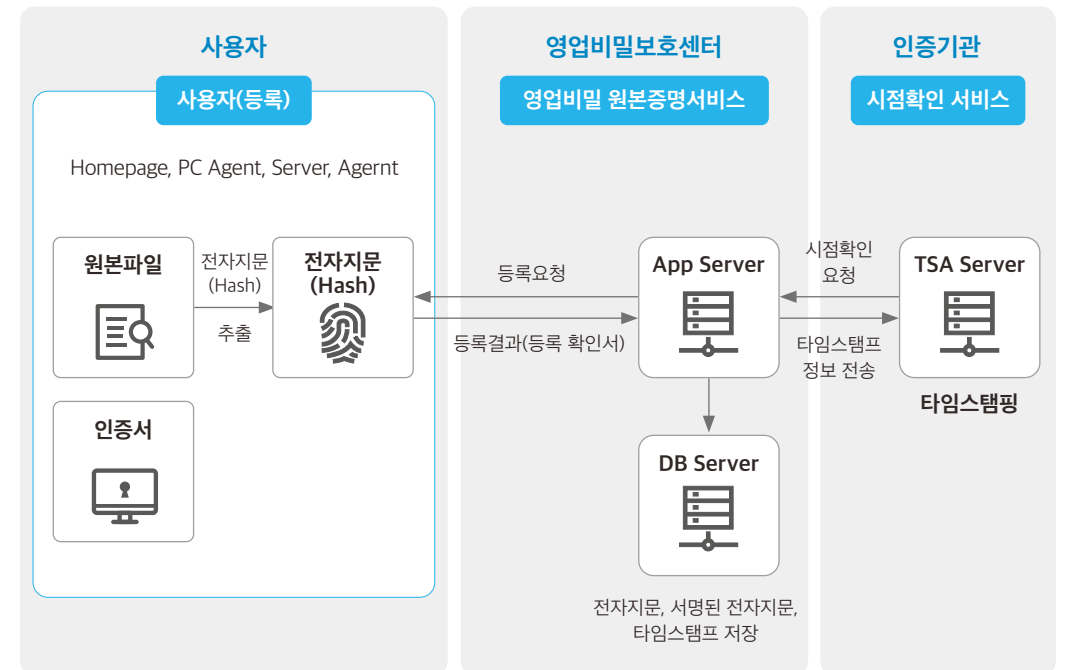
○ 원본증명서비스 개요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서비스이다.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비밀보호 관점에서는 영업비밀 관리 입증, 거래 협상 시 기술 유출 방지, 직원이직 시 영업비밀보호, 및 임직원 영업비밀보호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정 분쟁 대비 관점에서는 특허분쟁 대비(선사용권 입증), 연구개발 중인 기술 보호(모인 특허출원 대비), 및 경진대회 출품작 또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원본증명서비스 기능 및 절차

- [원본등록]**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시간정보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
- [원본검증]**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값과 이용자가 보관 중인 원본 전자문서의 전자지문 값을 비교하여 원본 검증
- [유지등록]**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원본등록 전자기록의 유효기간을 연장



출처: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 원본증명서비스 이용방식

홈페이지 웹	PC Agent 프로그램	Server Agent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 한 번에 복수의 파일 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 서버에서 원본증명서비스 요청 * 연계 Agent 모듈 샘플 제공

3장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1. 산업재산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침해 판단 방법	00
2) 침해 대응 방법	00
2. 저작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저작권의 침해	00
2) 저작권 침해의 대응 방법	00
3. 영업비밀의 침해와 대응 방법	00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00
2) 영업비밀 침해의 대응 방법	00
기타. 부정경쟁행위	00



3장.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개론

1. 산업재산권 침해와 대응 방법

기업 또는 개인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침해 등의 분쟁 발생 시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특허·디자인·상표 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권리자는 자신의 독점·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고 있는지 관련 업계의 소식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침해되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독점·배타권을 확보해야 한다.

1) 침해 판단 방법

권리자가 직접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1차적으로 판단한 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침해 성립 요건

-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 권리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실시일 것
- 업으로써 실시할 것
- 실시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산업재산권은 권리획득 기간이 제한적이고 권리의 포기도 가능하므로,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 (등록유지)해야 한다.

○ 권리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실시일 것

각 권리별 권리의 보호범위 판단 기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권리범위: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등록 특허의 청구범위	침해여부가 문제된 제품
<p>[구성1] 기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bladeless fan assembly)로서, [구성2]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베이스부, 상기 공기 유동이 유입되는 내부 통로를 포함하며, [구성3] 상기 베이스부 상에 탑재된 노즐, 및 상기 공기 유동을 방출시키기 위한 마우스부(mouth) 를 포함하고, [구성4] 상기 노즐은 상기 마우스부로부터 방출되는 공기 유동에 의해 상기 선풍기 조립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축을 중심으로 연장되며, 상기 노즐은 공기 유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기 마우스부가 배치되는 표면을 포함하고, [구성5] 상기 표면은 상기 축 으로부터 테이퍼가 진 디퓨저부(diffuser portion) 및 상기 디퓨저부의 하류부에 각을 이루며 위치된 가이드부 (guide portion)를 포함하는,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p>	<p>[구성 1] 날개를 두지 않고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선풍기 [구성 2] 노즐을 지지하는 지지체로서 그 내부에 송풍기와 같은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구비하여 외부 공기를 흡입하도록 되어 있음 [구성 3] 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베이스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구비하며, 이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음 [구성 4] 노즐이 내부 통로 선단에 설치되고, 공기를 고속으로 배출하여 기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음 [구성 5] 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 연장되고, 중심부는 비어 있어서 마우스로부터 배출되는 기류에 의해 내부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후방의 공기가 유입되어 전방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음 [구성 6] 마우스부로부터 배출되는 고속 기류에 의한 소음을 저감하고, 유동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확대 단면부(디퓨저부)를 두고, 그 선단에는 기류가 전방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가이드부를 두고 있음</p>
판단결과 : 양 발명은 목적, 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가 동일함	
권리범위: 등록공보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된 도면·사진·견본으로 표현된 디자인	
	<p>판단결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 내지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함</p>
권리범위: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p>판단결과: 표기의 방식 및 글씨의 형태가 유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첨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함</p>

○ 업으로써 실시할 것

업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영리 또는 비영리적인 실시를 불문하고,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적·반복적인 실시를 의미한다. 다만,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적으로 사용되어야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상품의 출 처표시를 위하여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실시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권리자는 타인에게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시자에게 사용권과 같은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한다.

2) 침해 대응 방법

◎ 권리자의 대응 방법

○ 경고장 발송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송부 하여 등록권리의 존재와 함께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에는 타인의 실시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심판 또는 민·형사상 소송 제기

심판 또는 민·형사상 소송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침해대상이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침해 여부를 판단받거나,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청구, 침해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 방법

- 권리의 유효성 확인
등록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경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심판 청구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등록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등록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시의 즉시 중단
권리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권리의 실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권리의 양수 또는 실시권 설정
등록권리를 실시해야만 하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아 정당한 권원을 획득해야 한다.

2. 저작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1)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저작권 침해의 대응 방법

◎ 저작권 침해를 받은 자의 대응 방법

- 저작권 인정 여부 확인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되어야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법적 대응
저작권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청구 또는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 방법
 - 저작권 부존재 주장
창작물이 저작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 저작물 사용 사유 확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학술·교육·시사 보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 경고를 받은 저작물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3. 영업비밀의 침해와 대응 방법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 목)

◎ 부정취득행위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부정으로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공개행위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이하, “(라)목”이라 함)
-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영업비밀 침해의 대응 방법

◎ 민사적 대응

-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 비밀보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의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법률은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적 대응

-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는 기업 내·외부자, 제3자, 개인, 법인 모두, 즉 누구든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체로서 처벌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공개해야 한다.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부정경쟁행위란 영업 주체가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 상의 우위를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확보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영업외관 포함)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영업외관 포함)를 정당한 사유(비상업적 사용 등)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등을 손상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품질오인 등 야기 행위	상품이나 그 상품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출처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의 체결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도메인 이름의 부정취득 등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상품형태의 보호	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인 경우는 제외)
아이디어 탈취행위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
기타 성과도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국장 등의 사용금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의 국가·국장,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의 대응 방법

○ 부정경쟁행위를 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부정경쟁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은 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장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1. 산업재산권의 분쟁 예방 방법	00
2. 영업비밀 침해의 사전 예방 방법	00



4장.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개론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전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맵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존재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출시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선행기술의 존재와 권리관계의 확인과 함께 분쟁발생 가능성 및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분쟁 예방 방법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맵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여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시 전에 자유실시 기술분석을 수행하여 특허 침해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술(특허·실용신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나, 다른 산업재산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 자유실시기술 분석

자유실시기술 분석이란,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을 실시하기 전에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으로,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라고도 한다. 자유실시기술 분석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침해 위험이 높은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성 분석, 회피설계, 라이선스 취득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유실시 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비침해감정서, 회피설계 노력 등은 후시 모를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자유실시기술 분석 절차

- 자사 기술을 관련 특허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의 목적, 구성요소, 구성요소 간 결합관계 등을 특정한다.
- 특정된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특허를 검색하고 관련성 높은 특허 리스트를 선별한다.
- 선별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자사 기술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침해 가능성을 판단한다.
- 침해 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설계, 무효화 가능성 검토, 라이선스 취득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 침해 가능성 높은 특허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

○ 회피설계

회피설계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기술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특허권의 기술요소 중 해석상 포괄적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구성적인 제한을 받는 기술요소와 차별성이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타인의 특허권의 기술요소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능과 품질의 저하가 없는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회피설계를 했다면, 회피설계한 제품이나 기술이 분쟁 대상의 특허를 확실하게 회피하는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

○ 특허 무효화 가능성 검토

특허 무효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인의 특허권이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무효 근거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특허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당하는 특허 요건 중 하나 이상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타인의 특허기술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찾아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를 무효의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활용된다.

○ 실시권(License) 취득

회피설계가 불가하고 특허 무효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하여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와 실시권 설정의 조건을 협의하여 실시권으로 설정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

2. 영업비밀 침해의 사전 예방 방안

◎ 기술보호 교육

○ 기술보호 교육의 필요성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수이며,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규정이나 지침 내용을 주기적으로 숙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 기업 대표, 재직자, 전문가 등 교육의 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방식을 차별화 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보호 교육의 운영

기술보호 교육은 기술보호에 대한 기업 내부의 관리규정 및 기술 관련 사고 사례, 규정 위반 시 벌칙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의 방식은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계약서 작성

직원과는 비밀유지서약서, 외부 기업과는 비밀유지협약서 등 사전 계약서 작성의 생활화

○ 사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기술유출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보호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영자들에게 기술보호의 시작이 되는 사전 대응 방법은 비밀유지계약서 등 사전 계약서의 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당사자들 간 계약상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계약서의 작성은 기업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거래관계뿐 아니라 내부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밀유지계약서의 분류

현재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있는 계약서의 표준서식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서식명
내부관계용	대상별 비밀유지계약서	입사자 비밀유지계약서
		재직자 비밀유지계약서
		퇴사자 비밀유지계약서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 비밀유지계약서
		프로젝트 참여자 비밀유지계약서
		협력업체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약정서
	기타 관련 서식	근로계약서
		교육이수확인서
		교육참석확인서
비밀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외부관계용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기술(노하우)이전계약서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타 기업의 모방 특허를 우려하고 있거나,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거나, 해당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이라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사전에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대상물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 재무, 회계인사, 마케팅, 생산 등 기업 운영·관리에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관련된 기밀 서류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원가, 거래처, 보고서, 매뉴얼 등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기밀서류 등
- SW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효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 개발기업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기술유출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술의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용기업에서는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장

지식재산권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

1.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저작권)	00
2. 블록체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0
3.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00
4. 내가 만든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0
5.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0
6. 해외 플랫폼(테무,알리) 침해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00
7. 상표권이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0
8.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00
9.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00
10. 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0



5장. 지식재산권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

1.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며, 인간만이 법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어떻게 저작권을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법적 해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는 AI를 사용하는 인간이나 기업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이나 문서의 경우, AI를 개발한 기업이나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미국 미국 저작권청은 2019년에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AI를 사용한 사람이나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음악은 AI를 운영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영국 영국의 저작권법은 **컴퓨터 생성 작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도 AI가 창작한 작품은 AI의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인간 창작자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AI를 운영한 주체가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아직 AI의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EU 법원의 판례에 따라, AI가 창작한 작품은 인간의 창작 활동이 결합되지 않으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저작권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경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AI 창작물에 대한 대응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AI 개발자와 기업의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상업적 목적을 가질 경우, AI의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등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가 창작한 작품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AI를 통한 창작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4. 결론

2024년 현재,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AI의 사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관련 법규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 블록체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블록체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품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디지털 장부인데, 이 장부는 변경할 수 없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과 증명

블록체인에 창작물의 정보를 기록하면, 해당 작품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타임스탬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음악, 글, 디자인 등 창작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그 창작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관리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수정 불가능하므로,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이를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작물에 대한 사용 조건이나 로열티(수익 분배) 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의 경우, 창작자가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로열티가 지급되거나,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4.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활용

디지털 예술작품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NFT를 통해 소유권을 표시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콘텐츠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서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거래할 때마다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방식은 블록체인 덕분에 지식재산권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체계적인 등록, 보호 및 활용입니다. 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기업은 자사의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특허를 신청하여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디자인권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활용 및 수익 창출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문화 확립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직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4. 내가 만든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당신이 만든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비슷한 부분 분석: 첫 번째로, 두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를 면밀히 비교해 보세요. 단순히 스타일이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요소나 전체적인 구성에서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및 디자인권 확인 당신이 만든 디자인이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기 때문에, 당신의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 침해 여부 확인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그 디자인이 특허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수정 비슷한 디자인이 발견되면, 가능하다면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 받기 디자인권 관련 문제는 법적이므로, 변호사나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디자인이 실제로 침해인지, 아니면 독창적인 디자인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5.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사실 확인 먼저 자신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자신의 권리가 실제로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침해가 일어난 시점과 방법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고장 발송 먼저 침해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경고장에는 침해의 중단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협상 및 해결 시도 경고장 발송 후, 침해자가 협상에 응할 경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지불이나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만약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나 상표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및 조정 법적 절차가 번거롭거나 시간 소요가 큰 경우,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해외 플랫폼(테무,알리) 침해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무(Temu)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침해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침해 신고 절차 활용하기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는 판매자가 자신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보통 “지식재산권 보호” 또는 “침해 신고”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제품의 사진, 링크, 설명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등록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판매자들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침해가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하며, 침해 제품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거나 해당 제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신고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상대방이 침해를 지속하는 경우, 해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국의 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후에도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침해 제품이 계속 올라오거나, 판매자가 다른 유사한 제품을 올린다면 추가적인 신고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와 협상하기

경우에 따라 판매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침해 제품을 제거하거나, 제품에 대한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7. 상표권이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권이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 확인 먼저,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본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실제로 상표권이 침해된 것인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가 사용된 제품, 광고, 웹사이트 등에서 침해된 상표를 확인합니다.

소통 및 협상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기업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통지서(Cease and Desist Letter)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신에는 침해된 상표와 해당 기업의 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 상호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침해가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청에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 프로그램 활용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표 등록 보호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자체적으로 상표 침해를 모니터링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침해된 상표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지식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양도는 상표, 특허, 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양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계약서 작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도하는 지식재산의 종류, 양도 조건, 양도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및 특허의 양도 저작권과 특허는 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에는 해당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새로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상표권 양도 상표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표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양도하면 그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양도 조건 및 대가 양도를 하게 되면 대개 금전적인 대가가 발생하며, 이는 계약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도된 지식재산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양도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는 창작자나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사업 전개나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작권자가 해당 자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 사용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책, 음악, 영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허용 범위 내 사용 일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특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이 특정 라이선스(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조건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이용은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교육 목적, 비평, 뉴스 보도 등에서 일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표시 및 출처 명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이름과 자료의 출처를 표기함으로써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작물을 사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 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와 상표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과 보호 범위는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특허

목적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즉, 특허는 제품이나 공정, 기계 등 새로운 기술을 보호합니다.

보호 범위 특허를 받으면 일정 기간(보통 20년) 동안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기능이나, 혁신적인 기계 장치 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목적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나 이름입니다. 즉,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이 상표로 보호받습니다.

보호 범위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짓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삼성'이라는 이름이나 '애플' 로고, '코카콜라'의 글씨체 등이 상표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

특허는 기술적인 발명에 관한 보호이며, 상표는 브랜드나 상호를 보호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제공하는 반면, 상표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특허와 상표는 각각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록

- 1.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소개 00
- 2.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락처 00



1.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소개



CONTENTS

서울지식재산센터 소개	02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	03
01	
지식재산권 창출·보호·교육 지원	04
01-1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04
01-2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05
01-3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05
02	
지식재산 활용 창업·성장지원	06
02-1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06
02-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07
02-3 소상공인 IP역량강화	07
02-4 IP디딤돌 프로그램	08
02-5 IP나래 프로그램	08
02-6 지식재산 재능나눔	09
03	
지식재산권 상담·자문	10

01

01-1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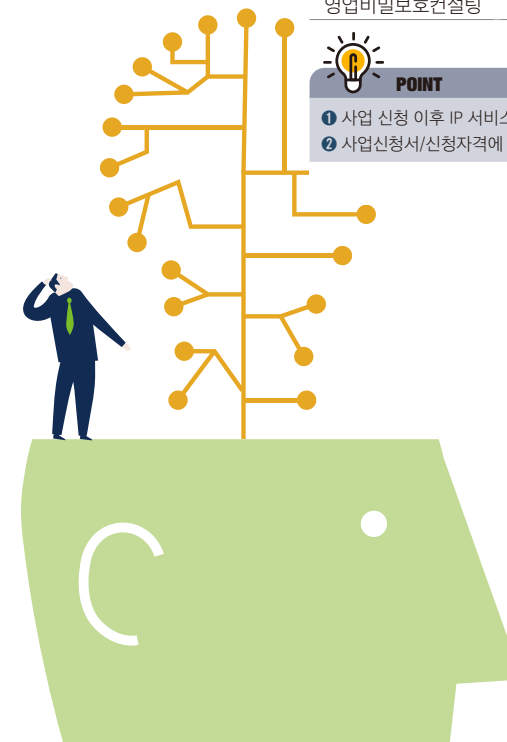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 등 5대 핵심 산업 집중 지원
- 지원규모** 50개사, 기업 당 최대 600만원 지원(지원금액은 자부담금 30% 제외 금액)
- 공고방법** 홈페이지(www.ipseoul.kr) 사업공고, 상반기(3월) 연 1회 신청·접수

IP 서비스 항목	세부 지원 항목	최대 지원 한도
해외 권리화	PCT	210만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해외OA	560만원/196만원/175만원/140만원
IP 조사분석	선행자료 조사·분석	70만원
	특허맵 작성	600만원
특허기술가치평가 컨설팅	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	600만원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특허기술 판매 또는 구매 중개	600만원
영업비밀보호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35만원

POINT

- 1 사업 신청 이후 IP 서비스를 진행한 건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 2 사업신청서/신청자격에 대한 협약서 제출



권성무 변호사 | 02-2222-3857

01-2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대응·분쟁예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고·상담 → 침해대응·분쟁예방 → 유권기관 연계지원 → 기술보호 교육)”

- 지원대상**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 지원분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컨설팅 및 대리인 비용 지원
- 지원규모** 개인·기업당 1건/년, 국내외 대리인 수입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공고방법** 홈페이지(<https://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수시 신청·접수

분야	최대 지원 한도
침해대응 심판소송 비용지원 (가처분, 소송, 경고장 등)	분쟁 유형별 50만원 ~ 2,000만원
분쟁예방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분쟁 조사분석, 가감정 등)	국내 350만원/건 해외 700만원/건



POINT

- 미 진행 건 대상
-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권성무 변호사
02-2222-3857

01-3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해, 기술보호, 분쟁사례 등 대상 별·주제 별·산업 별 맞춤형 교육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포함)”

- 지원대상** 서울시민, 중소기업 임직원, 창업예정자, 소상공인
- 지원분야** 대상 별·주제 별·산업 별 맞춤 교육
- 지원규모** 30회/년
- 추진절차** 수요 발굴/교육 신청 → 교육 실시(내외부 전문가) → 만족도 조사
- 교육안내** 홈페이지(<https://www.ipseoul.kr>) 서울지식재산센터



POINT

- 지식재산 교육 디지털 콘텐츠 시청 URL
YOUTUBE : 스바TV - 스바스케더링

고정민 책임
02-2222-3861

스바TV 스바TV서울경제진흥원
@www.sbatv0311 / 02-912-4611 / 02-910-6003

02

02-1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 3년간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수출실적 있거나 사업신청 년도에 수출 예정)
- 신청일정** 매년 초, 선정규모는 매년 상이함(2024년 1월 5일 ~ 2월 15일)
- 선정기준** 수출역량(현장실사 진행), 사업계획, 기업역량, 사업비전
- 지원규모** 3년 지원(연간 7,0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 후, 선정 기업이 하기 내용 중 선택
· 해외권리화, 특허기술 홍보 영상제작,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기업 IP경영 진단 구축 (지원분야 별 지원한도 상이)
- 공고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c.org) 사업공고 신청



POINT

-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해외권리화의 경우 현금30%+현물10%)



임성하 변호사 | 02-2222-3867 | 김희일 책임 | 02-2222-3866

02-2 중소기업 IP바로지원

“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현안에 따른 맞춤형 IP바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신청일정** 분기별(1차 공고 : 2024년 2월 25일~3월 4일) / 2차 공고 : 5월 중 접수예정)
- 선정기준** 현장실사, 지원사업의 필요성/활용가능성/수행의지
- 지원규모** 기업 IP현안 진단(신속진단KIT)을 통한 컨설팅 제공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세부사업 지원
* 특허맵, 특허기술홍보영상,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총 2,000만원 이하 (세부과제 별 지원한도 상이)
- 공고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ic.org) 사업공고 신청

장성훈 책임
02-2222-3856



- POINT**
- 기업분담금 40% (현금20%+현물20%)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지원 불가

02-3 소상공인 IP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등의 권리 확보 지원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정** 수시(3월 초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내용** 현안에 따른 기초상담 및 교육, 상표 출원 지원
- 지원규모**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 건당 60만원 이내/ 최대 2건 (기업분담금 20% 포함)
- 공고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ic.org) 사업공고 신청

백상렬 책임
02-2222-3863



- POINT**
- 지원제외 업종 확인(약국, 유흥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휴·폐업,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 기업분담금 20% (현금10% + 현물10%)
- 상표출원 지원일 경우 소상공인IP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
 - 상표출원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협력기관에 지원됨

02-4 IP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디어 고도화·국내특허출원·3D모델링 지원 등 IP기반 창업촉진 ”

- 지원대상** 서울 시민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사업자등록 X)
- 신청일정** 수시(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기준** 아이디어의 특허 대상 여부·신규성·구체성, 창업계획의 구체성
- 지원내용** 아이디어 기초상담(내부 전문가),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특허출원)
- 지원규모** 대리인 수수료 1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현금 20%, 32만원 포함)
- 공고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ic.org) 사업공고 신청

조영임 선임
02-2222-3868



- POINT**
-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 가능
 - IP창업준 교육 수료의 경우 개인 부담금 현금 20% 면제
* IP창업준 교육 : 지식재산·창업 주제 교육 32시간 과점, 연 3회 개최
 - 특허 출원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진행

02-5 IP나래 프로그램

“ 신규 R&D 방향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 등 IP기술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전환창업 5년 이내)
※ 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
- 신청일정** 연 2회 (2월, 6월) (상반기 : 2024년 2월 6일 ~ 3월 4일)
- 지원분야** 100일 이내의 기간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 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 방향성 설정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 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기타 경영 컨설팅
- 지원규모** 1,75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30% 별도)
- 공고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ic.org) 사업공고 신청

박은선 변호사
02-2222-3864



- POINT**
- 기업분담금 30% (현금15% + 현물15%)
 - 결과물 : 국내 특허 출원(1건)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

02-6

지식재산 재능나눔

“ 재능기부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에게 기부자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제고 ”

신청대상

재능 기부자

• 변리사, 디자이너, 지식재산 서비스업계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및 업무종사자

재능 수혜자

•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 지식재산 재능나눔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단체]

지원분야

지식재산 상담, 지식재산 교육, 선행 기술 조사, 브랜드 개발 등

신청일정

연중 상시 모집

신청방법

홈페이지(www.ripic.org/ipnanum)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부자, 수혜자 모두 신청 가능)



POINT

- 1 연간 재능 수혜는 최대 3건(분야별 1건) 이내 진행
- 2 이전년도 재능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 대한 중복 신청 제한
- 3 재능나눔 완료 후 추가 지원 (인쇄물, 매뉴얼 제작, 디자인 목업 등)은 불가

조영임 쌤
02-2222-3868



03

지식재산권 상담·자문

“ 서울시민·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신속 해결 지원 ”



성명	담당 세부사업	담당 분야	연락처
최동열(팀장)	업무총괄	전문컨설턴트(특허)	02-2222-3865
권성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변리사 (기계·금속)	02-2222-3857
임성하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변리사 (기계·금속)	02-2222-3867
박은선	IP나래 프로그램	변리사 (상표)	02-2222-3864
백상열	소상공인IP역량강화	전문컨설턴트 (특허)	02-2222-3863
김희일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전문컨설턴트 (특허)	02-2222-3866
고정민	지식재산교육	행정연구원	02-2222-3861
장성훈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전문컨설턴트 (브랜드)	02-2222-3856
조영임	IP디딤돌 프로그램	창업컨설턴트	02-2222-3868

3.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지원내용	연락처/홈페이지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교육 지원 기업성장단계별 IP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자문	02-2222-3860 www.ipseoul.kr www.ripic.org/seoul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정책	1357 www.mss.go.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 기능 수행	02-368-8787 www.ultari.go.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77-0900 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02-3489-7000 www.kaits.or.kr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44-8080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 one-stop지원	1666-0521 www.tradeseecret.or.kr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국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산업보안활동을 수행	111 www.nis.go.kr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문수사 및 예방, 지원지원활동	182 www.police.go.kr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 방지정책 수립 운영	1670-0007 www.ftc.go.kr
재단법인 경청	법률, 행정 지원 공익사업	02-6954-7469 www.thelisten.org

2025 지식재산경영 전략 가이드북

발행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발행일 2024년 12월

기획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홈페이지 www.sba.kr / www.ipseoul.kr

디자인 주식회사 디자인비파

* 이 책의 모든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
Seou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서울경제진흥원